

철도운행안전관리자 지정계(추가)

한국철도공사 정읍고속철도시설사무소장 귀하

감 독 자 : 정읍고속철도시설사무소 강 승 운 (인)

2017년 8월 4일

대표사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47	공동도급사 주 소 :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77	공동도급사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11
상 호 : (주)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	상 호 : (주)한국국토안전연구원	상 호 : (재)한국건설품질연구원
성 명 : 이 채 규 (인)	성 명 : 신 광 식 (인)	성 명 : 김 인 식 (인)

계 약 번 호	3100007012호	공 사 코 드	KR-CGE-17-012
공 사 명	2017년도 호남고속선 오송-광주송전간 콘크리트 궤도 점검용역		
성 명	이 문 환		
기 사	붙 임 : 1.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(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장) 2. 위임장		

위 임 장

한국철도공사 정읍고속철도시설사무소장 귀하

공 사 명 : 2017년도 호남고속선 오송-광주송전간 콘크리트 궤도 점검용역

상기 용역에 이문환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선정하고 현장에 관한 일체를 위임함.

2017년 8월 4일

대표사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47

상 호 : (주)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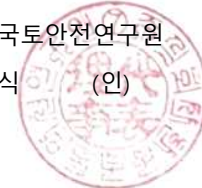
성 명 : 이 채 규



공동도급사 주 소 :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77

상 호 : (주)한국국토안전연구원

성 명 : 신 광 식



공동도급사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11

상 호 : (재)한국건설품질연구원

성 명 : 김 인 식



자격증 사본

유의 사항	
1.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,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	
2.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의 갱신 및 재교부사유 (철거 못쓰게 된 경우 및 잃어버린 경우, 철도안전 전문기술자격 동급변경 등)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재교부 받아야 한다.	
3.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	
4. 철도안전전문인력은 「철도안전법」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	

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(철도운행안전관리자)	
등록번호: 제 15-3570 호	
구 분: 교육수료	
성 명: 이문환	
생년월일: 1953.03.10	
주 소: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30번길 40-31	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교부합니다.	
교부연월일: 2015년 09월 02일	
소형의 직인, 교부자인 및 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	
(사)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	
02) 796-6792	

